

[산학관발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 적용과 대응 방향

황용식·김동완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우리나라는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단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는 배출시설 관리방식을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및 최적화하여 관리하는 선진화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는 1996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산업시설의 배출오염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ED)으로 재개정하여 최적이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의 명확화 및 의무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16).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정책이 단일 매체에 대한 관리에서 통합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전체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관리제도의 적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허가통합, 수용체 중심 관리, 과학기반 관리, 환경관리 최적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허가통합은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을 통합하고,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용체 중심관리를 통하여 배출영향분석과 사업장 주변의 사람 및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을 주요 목표로 한다. 과학기반 관리는 최적이용기술(BAT) 활용과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포함하는 환경관리 최적화로 구성되어 있다.

3. 결과 및 고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의 대상사업장과 적용시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 2종 사업장의 경우 2017년 이후 통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업종과 적용시기는 구분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대상사업장의 업종은 2017년(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2018년(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2019년(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2020년(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그리고 2021년(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으로 연차별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기초화학 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16, 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